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서명일 · 김동엽 · 김원일 · 남재욱 · 박영주
박현재 · 변보미 · 이우완 · 차중현
황점복 의원(10명)

찬 성 의 원 : 곽은정 의원

1. 제안이유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협치 중심의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들”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대표를**”을 “**부대표, 사무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서·날인한**”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

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실**”을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요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의원수	석
요청내역	
상임위원회명	성명
기획행정	
산업경제복지	
문화환경도시	
건설해양농림	
20 . . . 위 요청인(교섭단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귀하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한다)----- ----- -----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u>부대표</u> 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대표, 사무국장을</u> ----- -----.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u>연서·날인한</u>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 ----- <u>연서하여 서명하</u> <u>거나 날인한</u> ----- ----- ----- ----- -----.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	④ -----

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생략)

<신 설>

<신 설>

- 지체 없이 -----.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

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u>사무실</u> <u><신 설></u> 2. (생략)	<u>추천해야 한다.</u> ② <u>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③ <u>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u> 제5조(지원) ----- ----- 위 <u>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 -----. 1. ----- <u>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u> 2. <u>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

■ 지방자치법

-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회법

-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보고임.

I 의원발의 조례개정 개요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2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 공동발의 : 서명일 · 김동엽 · 김원일 · 남재욱 · 박영주 · 박현재 · 변보미 · 이우완 · 차중현 ·
황점복 의원(10명) 총 10명

- 제 출 일 : 제155회(정례회) 발의예정

- 제안이유

-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중심의 의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4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II 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해당 없음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 회의 참석,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교섭단체 지원 등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의원들이”를 “의원”으로 개정함.

☞ **【검토의견】** 법령 문장에서 단수와 복수를 특별히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장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적정

조례안 제3조(구성)의

-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표의원과 부대표 외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
- 제3항에서는 “연서·날인한 명부”를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로 개정함.
- 제4항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 보고기한을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개정함.

☞ **【검토의견】**

- 제2항에서 교섭단체의 내부 직위로 “사무국장”을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
 - 교섭단체 내부 조직 및 직제는 각 교섭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직위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3항의 “연서·날인”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으로 개정하고
- 제4항의 “즉시”를 “지체 없이”로 통일하는 사항은 법령 문장의 명확성과 조문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함.

☞ **【검토결과】** 적정

조례안 제3조의2(대표위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를 신설함.

- ① 대표위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 ② 대표위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검토의견】**

- 대표위원의 교섭단체 대표권과 의장과의 협의 기능을 명문화하여 교섭단체의 책임 있는 의사전달 및 협의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의원 유고 시 부대표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교섭단체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결과】** 적정

조례안 제4조(기능)에서는 제4호의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을 삭제함.

☞ **【검토의견】**

- 교섭단체는 의회 내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협의·조정을 수행하는 원내 협의체로서,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필수 기능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제1호의 “정당 정책의 추진” 과도 일정 부분 연계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 삭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적정

조례안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위원의 회의 참석)를 신설함.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검토의견】**

-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의장단 회의 등에 참석하여 교섭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의회 현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의장단 간담회(2026. 7. 7.)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의장단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필요시 참석” 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기존 의회 운영방향과도 부합함.
- 다만, “의장단 회의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식 의결기관이 아닌 의회 내부 협의 성격의 회의체이므로, “의장단 회의 등”의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 법령에서는 용어의 명확성을 요구하므로 “의장단 회의 등”은 그 정의와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정의 필요가 있음.
 - “의장단 회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 수정제안

<1안>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본회의와 구분하여 의장단 회의의 성격에 맞춰 적시한 방식

<2안>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구성원을 명확히 적시한 방식

☞ 【검토결과】 일부수용

조례안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을 신설함

-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교섭단체별 의석수와 의견을 상임위원 구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원 구성 과정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하고 교섭단체 간 합리적인 의석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¹⁾」상 상임위원 선임 절차와 개정안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의 최종 선임 권한은 본회의에 있으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이 본회의의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은 의회 원 구성의 핵심사항으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교섭단체 조례 간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위원회 조례의 개정 여부 및 비(非)교섭단체 의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일부수용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와 해당 위원 동의의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하되, 그 협이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한다. 이 경우 배정된 상임위원은 본회의의 의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장 추천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사례)

구분	자치단체(관련 조문)
광역의회(5)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45조)
기초의회(5)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제47조),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조례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1호**에서는 사무실 외 “의정활동 지원 공간” 지원 근거로 추가함.
제2호에서는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함.

☞ **【검토의견】**

- 교섭단체가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및 경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적정

□ 경상남도 및 유사 자치단체 교섭단체 경비 지원조항

구분	지원조항
경상남도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김해시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경비
용인시	제2조의4(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성남시	제2조의3(지원 등) 의회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재정 부담

- 예산과목 : 의정운영공통경비
- 교섭단체 공동 입법활동, 정책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수요 발생 가능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에 직접적인 교섭단체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까지 추가 편성 가능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P.31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의정운영공통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② 편성기준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까지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을 제외 후 산정)
- ※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III 종합 의견

○ 상위법 저촉여부 : 없음

○ 부서종합의견 : 일부개정 동의

-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의장단 회의 등 참석,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의정활동 공간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장단 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의장단 간담회(2026. 7. 7.) 결정사항과 부합하며,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전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의회 내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임위원·위원장 추천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및 실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검토결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한다) ----- -----.	적정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② ----- --부대표, 사무국장을 -----.	적정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u>연서·날인한</u>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 ----- <u>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u> ----- ----- ----- ----- -----.	적정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 ----- -----지체 없이 -----.	적정
<신설>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적정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생략)	제4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적정
<신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 수용
<신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 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일부 수용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적정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1. -----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	적정
<신설>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적정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김 세 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의 원: 서명일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협치 중심의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들”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대표를**”을 “**부대표, 사무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서·날인한**”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

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실**”을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요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의원수	석
요청내역	
상임위원회명	성명
기획행정	
산업경제복지	
문화환경도시	
건설해양농림	
20 . . . 위 요청인(교섭단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귀하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한다)----- ----- -----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대표, 사무국장을 ----- -----.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 -----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 ----- ----- ----- -----.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	④ -----

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생략)

<신 설>

<신 설>

- 지체 없이 -----.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

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u>사무실</u> <u><신 설></u> 2. (생략)	<u>추천해야 한다.</u> ② <u>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③ <u>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u> 제5조(지원) ----- ----- 위 <u>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 -----. 1. ----- <u>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u> 2. <u>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